

< 일 러 두 기 >

- 법령명 : 출입국 검사검역 과정 관리 규정
- 개정발표일 : 2017년 10월 16일
- 개정시행일 : 2017년 11월 01일
- 발표기관 : 구(舊)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 출처 : 창사(長沙)해관 (방문일 : 2021년 11월 05일)

출입국 검사검역 과정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검사검역 과정 관리 강화 및 검사검역 통관 효율과 업무 품질 제고를 위해 출입국 검사검역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검사검역 과정’이란 출입국 검사검역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출입국 화물 등 감독 관리 대상에 대해 검사검역을 실시하는 과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검역 신고 접수, 서류 심사 및 화물 감식, 현장·실험실 검사검역, 동식물 격리 검역, 검역 처리, 종합 평가, 통행 허가 및 서류화 등의 제반 업무 혹은 일부 업무 단계를 포함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과정 기한’이란 검사검역 각 업무 단계별로 제한된 업무 시간을 가리킨다.

제3조 화물 리스크, 기업 신용에 대한 등급별 분류 관리를 기반으로 합격 심사 관련 절차에 따라 출입국 화물을 대상으로 검사검역 감독 관리를 실시하되 각자 상응하는 검사검역 과정을 적용한다.

합격 심사 절차는 시료 채취, 검사(검역) 및 점검 단계, 평가, 검증 및 합격 보증 단계, 등록, 인가, 비준 단계 및 각 항목의 조합을 포함한다.

제4조 검사검역 과정 관리는 ‘검역 신고 접수 1회, 검사검역 1회, 시료 추출(채취) 1회, 검역 처리 1회, 통행 허가 1회 진행’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이라 함)은 중

국 전국 검사검역 과정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질검총국이 각지에 설립한 직속 출입국 질검총국(이하 ‘직속국’ 이라 함)은 관할 지역 내 검사검역 과정 관리와 조직 및 실시를 책임진다. 직속국 산하 지점은 각 관할 구역 내 검사검역 과정의 구체적 집행을 책임진다.

제6조 검사검역 전 과정의 전자문서화를 실시하며, 검사검역 과정 각 단계 업무의 전자문서화 구현을 통해 단계 간 업무 순환 속도를 높이고 과정 전반의 기한을 단축한다.

제2장 과정 단계

제7조 검역 신고 접수는 검역 신고인이 제출한 검역신고서 자료에 대해 검사검역기관이 심사 접수 처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8조 서류 심사 및 화물 감식은 검사검역기관이 관련 규칙과 요구에 따라 검역신고서 정보와 첨부된 증명서 정보에 대해 전면 심사를 진행하고, 각 단계 감식 작업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는 과정이다.

제9조 현장 검사검역은 검사검역기관이 화물 적치 현장에서 출입국 화물에 대해 검사검역을 실시하는 과정이다.

실험실 검사검역이 필요한 경우 요구에 따라 시료를 추출(채취)하여 실험실로 인계한다.

검역 처리가 필요한 경우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제10조 실험실 검사검역은 실험실에서 검측 항목 요구에 따라 접수된 시료에 대한 검측을 진행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유해생물, 의심증상에 대해 감정한 후 검측 및 감정의 결과 보고서를 발급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11조 동식물 격리 검역이란 살아있는 동물 및 동물 유전물질, 식물 종자, 종묘에 대해 입국 후 지정 격리장(묘포) 혹은 지정 장소로 옮겨 검사검역을 진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12조 검역 처리는 검역처리 사업장이 검역 처리 요구에 근거하여 출입국 화물, 운송수단 및 기타 검역 처리 대상에 대해 무해화 처리, 위생 처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13조 종합 평가는 검사검역기관이 합격 평가 절차에 근거하여 출입국 화물의 적격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사검역증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이다.

제14조 통행 허가는 검사검역기관이 종합 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출입국 화물에 대해 통관 허가서 혹은 기타 검사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이다.

제15조 서류화는 각 과정 단계에서 제출된 온전하고 유효한 문서 자료, 데이터 등을 검사검역기관이 규정에 따라 서류로 구축하는 과정이다.

제3장 과정 관리

제16조 합격 평가 관련 절차 및 화물 리스크, 기업 신용도에 근거하여 검사검역 과정은 본 규정 제2조에 열거된 모든 업무 단계를 포함해도 되고, 그 중 일부 업무 단계만을 포함해도 된다.

제17조 질검총국은 리스크 평가를 토대로 화물 리스크 등급과 기업 신용도에 따라 현장 및 실험실 검사검역의 비율(이하 ‘표본추출 비율’이라 함)을 적정 수준으로 정하며, ‘검사 대상 임의 추출, 검사 요원 임의 파견’을 기본 원칙으로 표본추출 작업을 실시한다.

제18조 표본대상으로 추출되지 않은 화물은 서류 심사 요건에 부합할 경우 통행이 허가된다. 서류 심사는 등록, 인가, 비준, 평가, 검증 및 합격 보증에 대한 심사 등 합격 평가 절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표본 대상으로 추출된 화물은 규정에 의거하여 현장 및 실험실 검사검역 등이 실시된다.

제19조 검사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증거를 통해 리스크 등급 상향 가능성이 입증된 화물 및 검사검역 신용등급 C급 이하의 송하인, 수하인 혹은 검역신고인은 리스크 평가를 통해 표본추출 비율을 높게 적용할 수 있으며, 정도가 심할 경우 100%까지 올릴 수 있다.

표본추출 품질 안전수준이 연속적으로 안정적이거나 리스크 등급이 낮은 화물 및 검사검역 신용등급 A급 이상인 송하인, 수하인 혹은 검역신고인의 경우 리스크 평가를 통해 표본추출 비율을 최저 비율로 낮게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질검총국은 화물 리스크와 기업 신용에 대한 등급 분류를 일괄적으로 시행하여 표본추출 비율을 확정하고, 과정 기한 제정 및 리스크 감식 작업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며, 정보화 시스템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과 실시간 동향 관리를 실시한다.

제21조 국내외에서 중대한 전염병 및 품질 안전 사고가 돌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질검총국은 상황에 따라 전국 범위의 신속한 대응 조치를 통합 실시한다.

제4장 과정 감독관리

제22조 검사검역 과정은 정보화 시스템으로 관리되며, 제반 과정

의 전자 기록은 실제 업무 현황과 일관되게 일치해야 한다.

제23조 검사검역 과정의 각 단계 간에는 검역신고서와 첨부 증빙서가 적시에 전달되어 효과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24조 각급 검사검역기관은 질검총국의 규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하며, 규범 이행과 업무 품질 확보를 전제로 업무 효율을 제고하고 과정 기한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5조 각급 검사검역기관은 검사검역 과정 집행 현황에 대한 감독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26조 질검총국은 각 직속국의 검사검역 과정 관리 현황에 대한 감독 및 조사를 진행하며, 각 직속국의 과정 기한 이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사전 경보 조치를 취하고, 이를 성과 평가 심사에 반영한다.

제5장 부칙

제27조 각 직속국은 업무의 실제에 기반하고 본 규정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제정한다.

제28조 출입국 화물 포장, 운송수단, 컨테이너, 우편물, 휴대물의 검사검역 과정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관련 문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 출입국 화물의 리스크 등급 분류는 질검총국의 리스크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0조 수출입업체의 신용 등급 분류는 질검총국의 <출입국 검사검역업체 신용관리 방법>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제31조 본 규정은 질검총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제32조 본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 국가 출입국 검사검역국이 발표한 기존의 <출입국 검사검역 과정 관리 규정>(국검법〔1999〕386호)는 동시에 폐지된다.